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생활문화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기반의 자생적인 생활문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공모'를 추진합니다.

지역 주민, 동호회 및 단체, 공간 등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참여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생활문화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주요내용		
공모명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공모		
공모대상	<p>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통합하고 매개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자생적인 생활문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p> <p>[신청자격]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지역 주관기관/단체) ※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기관/단체가 신청 ※ 국고보조금 지원의 고른 지역 안배를 위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사업' 대상 지역은 제외</p>		
사업기간	교부일로부터 ~ 11월		
지원규모	8개 지역, 지역별 173백만원 내외 (총 1,382백만원 규모) ※ 지원신청 규모 및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간	단년도 지원 ※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시 가점 부여		
지원사항	①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②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③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 3개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및 운영·관리비		
접수방법	<p>시군구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은 주관단체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공문과 신청서 제출</p> <p>[접수서류]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주관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p>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1.02.26.(금) 17:00 도달 공문 에 한함		
접수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kej@rcda.or.kr)		
사업설명회 개최	구분	일시	참여방법
	온라인 설명회	2. 3.(수) 14:00	유튜브(www.youtube.com)-지역문화진흥원 검색 ※ 공모에 대한 질의·응답은 아래로 별도 문의 바람
관련문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02) 2623-3105 / kej@rcda.or.kr		

■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생활문화 가치 확산

-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의 자율성·다양성 존중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위한 생활문화 가치 확산 필요
 -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등에 관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를 가진다.
 -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모두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모두가 창조하는 문화를 통한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 추구하고 공동체 화합을 지향하는 생활문화 정책 마련 필요
 -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참여 및 향유 확대 위한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목표 “자치와 분권의 원리로 지역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기반 자생적 생활문화 정책 추진 환경 마련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주민주도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권 문화확산 기반 마련
 - ※ 생활SOC 정책추진을 통해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대 조성
 - ※ 생활문화센터 개관('17년 93개→ '20년 147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17년 1,555개→ '19년 1,771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총수혜자수 '17년 67,452명→19년 90,241명/활동건수 '17년 3,471건→ '19년 3,784건)
- 중앙 주도의 획일화된 단위사업별 지원방식 개선,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만들어 가는 자생적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전략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II 추진계획

1. 지원계획

□ 지원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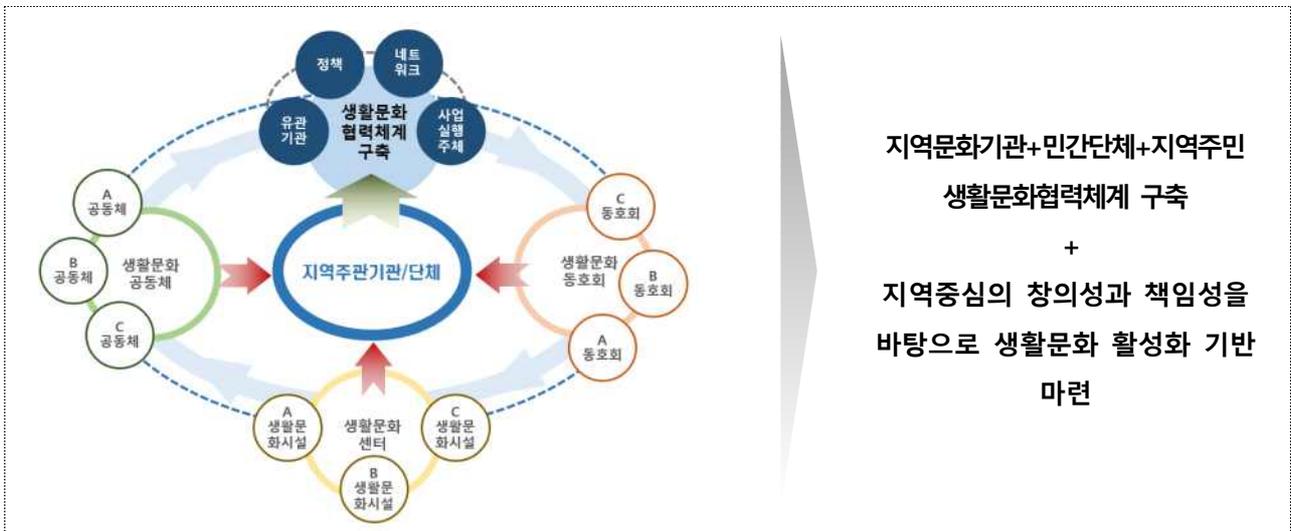
- 지원목적: 지역주민의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 발견과 건강한 지역관계망 형성 및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원기간: 2021년 3월~11월(9개월)
- 지원규모: 기초지자체 8개 지역/총1,382백만원(지역별 173백만원 내외)
※ 지원신청 규모 및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공공/민간 단체·시설
※ 기초지자체가 지역주관기관/단체 추천, 주관 기관/단체가 사업 신청
※ 고른 지역 안배를 위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사업' 대상지 제외
- 지원기간: 단년도 지원, 당해년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 시 가점 부여
- 지원내용: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통합사업 운영관리비(지역주관기관/단체)

□ 단위사업별 지원규모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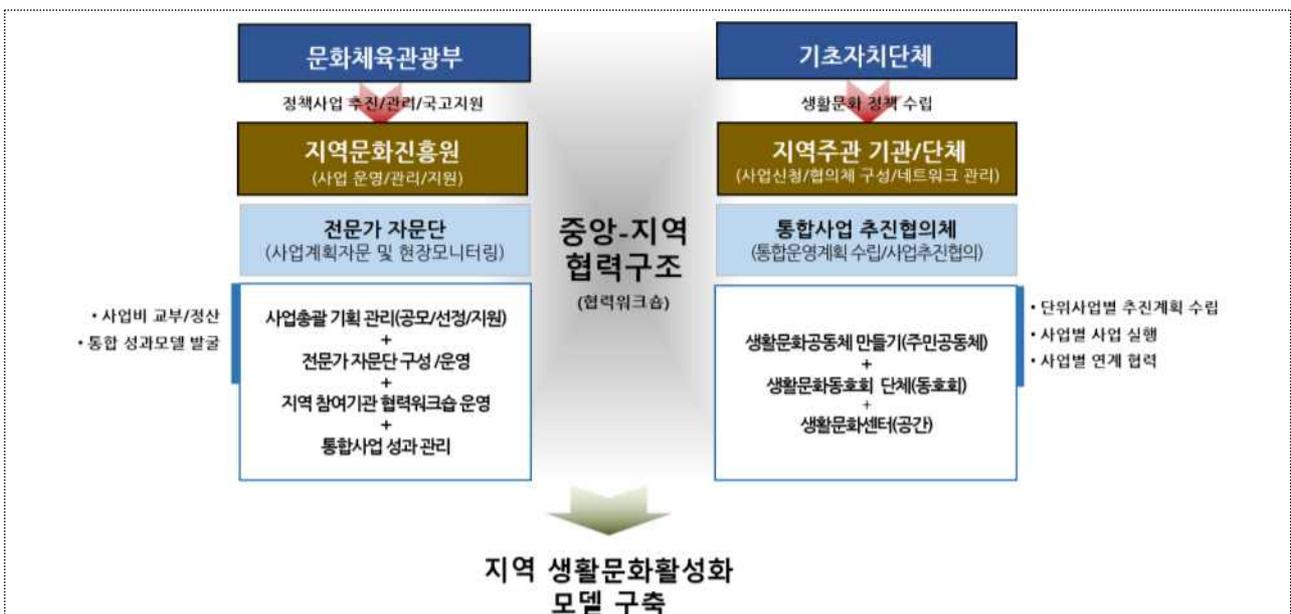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내용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 지원내용 :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 지원규모 : 지역당 생활권 공동체 3개 내외, 60백만원 내외/1개 공동체당 평균 20백만원 - 지원대상 : 마을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교류 지원, 생활문화 창의 프로그램 활동 지원(지역 생활문화 환경과 여건에 따른 활동 지원) - 지원규모 : 지역당 4개 단체 이상, 45백만원 이내 / 1개 단체 당 평균 11백만원 - 지원대상 :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동호회 연합회 공공/민간단체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 생활문화센터 거점 플랫폼 형성을 위한 운영 지원(지역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성 및 교류/지역 생활문화시설 간 연계 및 교류 등) - 지원규모 : 지역당 2개 센터 이내, 40백만원 이내 / 1개 센터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대상 : 2020년 12월 기준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붙임2 참조) ※ 단, 기초자치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
통합사업 운영 관리	- 지원내용 : 통합사업 운영·관리(단기근로자 활용비 및 사업 운영 관리비) · 통합 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운영(단위사업별 추진주체) · 사업 추진협의체 협력 연수회(워크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 사업설명회, 협력연수회(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사업신청-정산, 추진주체 행정지원 등 - 지원규모 :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최대 28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1개 지역): 173백만원 내외 · 사업비: 생문공(60백만원)+생문동(45백만원)+생문센(40백만원)=145백만원 · 사업운영관리: 최대 28백만원(사업비의 20% 이내)	

□ 추진방향

- 지역 고유의 문화환경 및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의 자율적·자생적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 문화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지역주민 등 생활문화사업 실행 주체 협의체 구성 및 협치 통한 사업 추진
- 지역주관기관/단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역할과 기능 설정, 참여 실행주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참여와 인식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가치 확산 기반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중앙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행정지원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관리
	지역문화 진흥원	생활문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총괄 기획 관리/ 공모·선정·지원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지역참여협의체 협력연수회(워크숍) 운영 통합사업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사업 지역 사업계획 자문 통합사업 지역별 현장모니터링 및 평가 자문단 회의 및 정책 종합자문
지역	지방자치 단체	기초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지역주관기관/단체 매칭, 지역주관기관/단체 사업운영 관리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
	지역주관 기관/단체	통합사업 추진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사업 협력체계 구축(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 내 생활문화사업 통합 추진 방향 협의 및 의견 수렴, 사업 간 연계 방안 논의 해당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방향 및 통합 전략 수립 통합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신청, 정산 등 행정지원 통합사업 운영 및 관리, 추진주체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추진주체간, 참여자간 네트워크 지원 사업 성과도출 등 단계별 협의를 통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실행 주체	단위사업별 추진주체 (단체, 시설)	단위사업별 참여자(주민, 동호회) 중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실행·활동 매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실행·활동 매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실행·활동 매개
		단위사업별 참여주체 (주민, 동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의견 제안 / 사업 참여(프로그램, 행사, 교육 등) 단위사업별 주체적·능동적 참여·실행 각 단위사업 안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활동 주체로 참여

□ 통합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고려사항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사업실행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기관, 단체, 주민 등 추진체계 구성 및 협약 체결 - 참여자 의견 수렴 - 지자체 추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환경 분석 - 사업방향 및 목표 설정 - 사업 운영계획 수립 - 단위사업 간 연계 방안 모색 및 사업 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주체별 사업실행 - 추진주체 간 협력 프로그램 - 협의체 정기 협력회의 개최 -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생활문화주체 발굴	생활문화비전 도출	생활문화 협력 운영 및 환류

(1) 협력체계 구성

- 추진체계 구성 및 협약 체결
 - 지역주관기관/단체- 각 생활문화사업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 구성 (지역주관기관/단체-추진주체별 역할 및 협력사항 등)
- 지역주민, 동호회 등 사업 참여 당사자 의견 수렴
- 지자체 추천 승인(각 지자체 문화 관련 부서 문의)

(2) 사업계획 수립

- 지역 문화환경 및 생활문화 환경(조례, 시설, 인력, 활동, 콘텐츠 등)과 특성 분석
- 통합 사업 추진에 따른 목적 및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
- 단위사업별 운영 계획(사업별 목적, 추진내용, 사업규모, 예산계획,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방안 등)
 - ※ 붙임1.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참조
- 단위사업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사업계획서 반영
- 차년도 지속성을 고려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 향후 계획
 - ※ 3개의 생활문화 사업을 단순히 병렬로 나열한 사업계획은 통합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① 신청 지역의 문화 환경 진단과 참여 주체의 수요에 따라, ② 3개 사업 간의 연계 방안과, ③ 그에 따른 지역의 자생적인 생활문화 기반 마련 및 사회적문화적 효과, ④ 2021년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황이 보편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3) 사업실행 및 협력

- 지역주관기관/단체: 생활문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참여주체 발굴,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실행주체 행·재정적 지원, 협의체 정기 협력회의(사업설명회, 공유회 등), 통합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방안, 향후 계획 등 수립
 - ※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단위사업별 자문회의 및 연수회(워크숍) 등 참여
- 단위사업별 추진주체: 통합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여 사업 실행
- 지역문화진흥원: 통합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주관기관 협력 연수회(워크숍), 성과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2. 생활문화 사업별 개요

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상생활의 주민 교류 및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생활권 내 관계망 형성
 - 개인의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 발견 및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지원대상: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마을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
- 지원내용: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 지원예산: 590백만원/8개 지역 내외(1개 지역당 평균 74백만원)
- 지원규모: 총 24개 단체 내외(1개 단체당 평균 2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예산 : 1개 지역당 6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 1개 지역당 3개 내외 공동체 ■ 지원대상 : 마을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관계형성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계활성화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심확장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체 관계 형성의 시작 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존 공동체의 관계 회복 및 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동호회, 교육공동체 등의 지역차원의 관심 및 참여 확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체 관계 형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체 회복 및 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지원(활동, 사람, 공간) 확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형성형) 새로운 공동체 형성 및 주민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율 기획 활동 지원(1개 공동체 10~15백만원) · 대상 :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공동체 - (관계활성화형) 주민들 간의 관계망 회복 또는 복원을 위한 주민 자율기획 활동 지원 (1개 공동체 15~30백만원) · 대상 : 기존에 활동을 통해 공동체는 형성되었지만 현재 갈등이 있거나 침체로 활력이 필요한 공동체 - (관심확장형)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 자율기획 활동 지원(1개 공동체 15~30백만원) · 대상 : 장르 중심의 동호회, 동아리, 육아·교육공동체 등 특정 활동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 ■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 중심에서 벗어난 생활권 내 관계망 형성 및 확장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반 조성 - 계획 및 활동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중심의 협의 구조 마련 - 공동체 역량 및 의식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등 종합적 공동체 활성화 전략 수립 ■ 유의사항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를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간 사전설명회 및 그룹자문 참석 	관계형성형	관계활성화형	관심확장형	공동체 관계 형성의 시작 지원	기존 공동체의 관계 회복 및 복원	동호회, 교육공동체 등의 지역차원의 관심 및 참여 확대	공동체 관계 형성	공동체 회복 및 복원
관계형성형	관계활성화형	관심확장형							
공동체 관계 형성의 시작 지원	기존 공동체의 관계 회복 및 복원	동호회, 교육공동체 등의 지역차원의 관심 및 참여 확대							
공동체 관계 형성	공동체 회복 및 복원	지역지원(활동, 사람, 공간) 확대							

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 지원대상: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생활문화시설
- 지원내용: 생활문화동호회 활동/교류 지원, 생활문화 창의 프로그램 활동 지원
- 지원예산: 472백만원/8개 지역 내외(1개 지역당 평균 59백만원)
- 지원규모: 총 32개 단체 내외(1개 단체당 평균 11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예산 : 1개 지역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1개 지역당 최소 4개 단체 이상(1개 단체당 평균 11백만원) ■ 지원대상 :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민간단체,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연합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지원내용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교류 지원, 생활문화 창의 프로그램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생활문화 환경과 여건에 따른 동호회 활동 지원 ■ 활동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교류/협력 활동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예시 :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생활문화 주체(주민, 동호회, 단체, 공동체 등) 간 협력 활동(전시, 발표, 축제, 공유회, 생활문화 원탁회의, 베틀시장, 함께하는 인생식탁, 정서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문화동호회 사회 공헌 활동 등)</div> -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예시 : ① 지역 특유의 자원(벚꽃, 말총, 조개껍질, 바다표류물 등)을 활용한 생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②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 활동(마을 설화 인형극, 마을 역사 동화책 만들기 등)</div> -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창의적인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예시 : ① 생활문화 영역의 확장하는 프로그램(새활용, 농업놀이, 적정기술, 반려동물, 비건문화 등), ② 새로운 방식의 생활문화 활동(생활문화 체험 꾸러미 나누기, 가상 합창, 비대면 음악회 등)</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활동예시를 참고하여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동호회 활동 지원이 아닌 복수의 동호회와 지역 내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 간의 교류와 협력 활동 -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생활문화 가치(삶의 질 향상, 마음 치유, 자신감 회복 등) 확산 목적의 프로그램 지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일상 속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발굴 및 지원 ■ 유의사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단체 간 교류를 위한 연수회(워크숍), 공유회 등 진행 시 참석 요망

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형성을 통해 자생적 생활문화 가치 확산 및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 ※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개관·운영 중인 센터(붙임2. 생활문화센터 개관 목록 참조)
- 지원내용: 지역 중심 생활문화센터 거점 플랫폼 형성 프로그램 지원
- 지원예산: 320백만원/8개 지역 내외(1개 지역당 최대 40백만원)
- 지원규모: 총 16개 센터 내외(1개 센터당 최대 20백만원)

□ 세부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생활문화 센터 거점 플랫폼 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예산 : 1개 지역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1개 지역당 2개 이내 생활문화센터(1개 센터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대상 : 2020년 12월 기준,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없는 경우에만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붙임2. 생활문화센터 개관 목록 참조) ■ 지원내용 :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거점 플랫폼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역할 강화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운영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연계 프로젝트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예시: 지역에 있는 타 생활문화 시설 간 역할 정립을 통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 간 연계 축제 지원</div> - 지역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성 및 네트워크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예시: 생활문화 포럼, 연수회(워크숍), 운영자 및 생활문화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div> - 지역 내 문화주체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문화활동 창조 프로그램 운영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예시: 새로운 지역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아젠다 발굴 및 활성화 모색, 지역환경과 수요에 적합한 생활문화센터만의 고유의 콘텐츠 개발·발굴</div> ■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통과 교류 활동을 통해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내 생활문화 중심 플랫폼이 되기 위한 운영 내실화 강화 - 지역 간,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활동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 분권화에 따라 자생적인 생활문화 형성·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 ■ 유의사항: 일반지원에서 추진하는 선정단체 예비교육, 권역별 모니터링, 성과공유회 참석 요망

3.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모명: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 신청기간: 2월 1일(월)~2월 26일(금) 17시
- 신청자격: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공공/민간 단체 및 시설
 - ※ 주관단체로서 예산교부 및 정산 대상자
 - ※ 고른 지역 안배를 위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사업' 대상지는 제외
- 신청방법: 이메일(kej@rcda.or.kr)을 통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공모신청 공문 [자체서식]
 - ②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참여확약서, 지자체추천서 등 [지정서식]
 - ③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지원규모: 지역별 173백만원 내외
 - ※ 지원신청 규모 및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부문

지원사업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의 주민 교류 및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생활권 내 관계망 형성 · 개인의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 발견 및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지원내용: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 지원규모: 지역당 생활권 공동체 3개 내외, 60백만원 내외/1개 공동체당 평균 20백만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생활문화 주제 간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 지원내용: 생활문화동호회 활동/교류 지원, 생활문화 창의 프로그램 활동 지원(지역 생활문화 환경과 여건에 따른 활동 지원) - 지원규모: 지역당 4개 단체 이상, 45백만원 이내 / 1개 단체 당 평균 11백만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형성을 통해 자생적 생활문화 가치 확산 및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원내용: 생활문화센터 거점 플랫폼 형성을 위한 운영 지원(지역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성 및 교류/지역 생활문화시설 간 연계 및 교류 등) - 지원규모: 지역당 2개 센터 이내, 40백만원 이내 / 1개 센터당 최대 20백만원 ※ 기초 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
통합사업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통합사업 운영·관리(기타직 보수 및 사업 운영 관리비) · 통합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각 사업 실행주체) · 사업 추진협의회 협력 연수회(워크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 사업설명회, 협력연수회(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사업신청-정산, 참여주체 행정지원 등 - 지원규모: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최대 28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1개 지역): 173백만원 내외
- 사업비: 생문공(60백만원)+생문동(45백만원)+생문센(40백만원)=145백만원
- 사업운영관리: 최대 28백만원(사업비의 20% 이내)

- 지원 불가 프로그램
 - 참여하는 주민, 동호인 및 동호회 단체 사례비 지급 행사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활동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 지원 사업 예산을 상금 및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
 - 공공성을 저해하는 개별 주민 또는 동호회, 단체의 활동

□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 기본현황분석: 지역문화 환경 및 특성 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
- 사업추진계획
 - 통합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추진방향 / 목표 / 통합 전략 등)
 - 사업추진체계(협의체 구성, 역할 등)
 - ※ 단,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위사업별 추진 주체(단체·시설)는 각 생활문화 사업(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일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사업추진 주체 협력 관계 : 업무 범위 및 분장, 협조, 운영 인력 배치 등
 - 통합 사업 추진협의체 협력 연수회(워크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계획, 예산계획
 - ※ <붙임1.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차년도 지속성을 고려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 향후 계획
 - 통합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환류방안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별 목적, 추진내용, 사업규모, 예산계획, 지역주민 주체적 참여방안
 - 단위사업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 단위사업별 추진 주체 참여확약서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운영 주관단체 추천서

4.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선정규모 : 기초지자체 8개 지역/총1,382백만원(지역별 173백만원 내외)
 - ※ 선정 규모 및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문화정책, 문화기획, 생활문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7인 내외)된 심의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의, (2차) 발표·인터뷰 심의
 - ※ 1차 서류심의에서 최종 선정 수의 2배수 선정
 - ※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사업 대상지역 제외)**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강원 태백시, 전북 고창군
 - ※ **(중복지원 제외)** 최종 선정된 지역의 생활문화 사업(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별로 참여하는 단체·시설이 각 사업의 일반 지원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 나중에 결정되는 일반 지원의 선정을 취소함
- 심의기준(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100)
사업의 이해도 및 필요성	- 지역 생활문화 특성 및 현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 생활문화 환경 및 현황 분석에 대한 진단 결과 제시 - 지역 내 생활문화 가치 지향점 및 목적 방향성 부합도	20점
계획의 적절성	- 통합사업 참여주체 간 합의와 공동의 이해도 - 단위사업별 계획의 적절성 및 통합 추진의 효과성 - 예산 계획의 합리성	40점
내용의 실현가능성	- 통합사업 및 단위사업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 협력체계 구성 규모, 조직, 역할의 적절성 - 추진조직의 안정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 협력·추진주체별 거버넌스 구축 적절성 및 안정성 - 추진일정 및 절차의 적절성	30점
기대효과	- 사업 지속 및 확장 가능성 -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 기여도 -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가능성 -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성 확보 -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 경쟁력 증대	10점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동호회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 평가방법 : 기준에 따른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출
-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총점 100점의 70%) 단체 상위 단체 선정
 - ※ 동점자 발생 시, 1)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 우선 선정, 2) 심의위원 논의를 통해 결정

□ 유의사항

- 해당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 청탁이 있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 기관·단체·시설이 포함된 경우 지원대상 안배를 위해 선정 과정에서 후 순위로 고려될 수 있음
- 선정 후에도 컨설팅 등을 통해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타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정산실적보고를 완료하지 못한 단체를 포함한 지역이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후 교부
- 아래의 경우에는 선정 후에도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단, 대표권이나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의1, 제1항 중

□ 지역 주관단체 필수 이행사항

- 사업선정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프리랜서 등 포함)은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와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지역별 사업 추진협의체 월례회의 추진 및 보고(매월 다음 달 5일)
-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사업 관리지침> 준수
- 협력 연수회(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등 진흥원 주관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석
-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우리 원이 수시로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

5. 추진일정(안)

항목	일정	세부내용
신청접수	2.1.(월)~ 2.26.(금) 오후 5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이메일(kej@rcda.or.kr)을 통한 서류 제출 ※ 모든 서류가 시간 내에 구비·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행정검토	2.22.(월) ~ 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방법: 서류미비 및 제출지연 등 심사 자격 검토
↓		
서류심의	3.3.(수) ~ 3.5.(금)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7명(지역문화·생활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최종 선정 수의 2배수 내외 선정 ■ 합격단체 발표: 3.9.(화) 오후6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및 문자 - 발표 심의 일정 및 발표 자료 제출 안내
↓		
발표심의	3.11.(목) ~ 3.12.(금) 진흥원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준비물: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파일 15쪽 내외) ■ 심사방법: 단체별로 사업계획 주요 내용 발표 →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 → 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추진) ■ 선정단체 발표: 3.17.(수) 오후6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또는 문자 - 협력 연수회 일정 확정하여 함께 안내
↓		
선정지역 대상 협력연수회(워크숍)	3.24.(수)~3.2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전문가 사업계획 컨설팅(협력연수회(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자문단(6명 내외), 선정지역 주관단체 ※ 선정단체 필수 참석, 불참 시 선정을 취소함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4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후 교부신청 ■ 보조금 통장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 교부신청 및 교부확정 ■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 신청, 승인 ※ 교부신청서 승인 시점에 따라 선정단체별로 교부일이 다를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승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개설 확인 후 e나라도움 각 사업별로 교부(예치형) ■ 교부 후 사업 개시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

□ 예산편성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1년 11월 30일(화)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예산편성 항목 및 기준

○ 예산과목 및 내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및 내용
인건비 (110)	일용임금(04)	통합사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초단기인력활용비(보조인력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홍보비, 구입비, 제작비, 회계감사수수료,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임차료(07)	장비 등 각종 임차료,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 등
	복리후생비(12)	통합사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여비 (220)	국내여비(01)	사업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한 관내·관외출장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사업 추진을 위한 다과비, 간담회비 등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보조(01)	단위사업별 추진주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편성

○ 예산편성 기준

- ※ 아래에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비목/세목 편성 불가
- ※ 부가가치세를 사후 공제·환급받는 단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 ※ 아래 제시된 기준 금액은 참고 자료이며,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
- ※ 인건비성 경비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기준보다 하향 지급은 가능하나 상향 지급 불가
- ※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단체별로 적절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편성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및 내용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업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 생활문화 활동 보조인력활용비는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음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초단시간 근로자)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고용한 인력 활용비 - 1인 1시간당 8,720원 - 단, 1인 당 최대 주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준수 ※ 단체 내부인력(대표 및 상근직원)에 지급 불가 ※ 동일 인물에게 전문가 사례비 지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강사 사례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사례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주강사</td> <td>시간당 43,000원 이내</td> <td>- 1일 최대 3시간까지</td> </tr> <tr> <td>보조강사</td> <td>시간당 22,000원 이내</td> <td>- 재료비 경비 함께 지급 불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구분	사례비	비고	주강사	시간당 43,000원 이내	- 1일 최대 3시간까지	보조강사
구분	사례비	비고							
주강사	시간당 43,000원 이내	- 1일 최대 3시간까지							
보조강사	시간당 22,000원 이내	- 재료비 경비 함께 지급 불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	----------	---------

- 특강 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가능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동일인에게 강사비와 재료비 등 타 항목과의 중복 지급 불가

- 토론회, 포럼 등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

※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 원씩 지급 가능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회의 참석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회의참석 수당	· 자문회의, 좌담회 등	150,000원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 원) 지급 (1일 총 20만 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인 및 동호회 등에 사례 불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행사 진행 사례비(사회자 사례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행사 사례비</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교통비 및 부대경비 편성 불가																
		- 컨설팅 사례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컨설팅 사례비</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컨설팅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컨설팅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 원씩 지급 가능(1일 최대 4시간)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원고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 1(원고 집필인)</th> <th>기준 2(원고 내용)</th> <th>사례비(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 강사 사례비 지급 기준 A급</td> <td>·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td> </tr> <tr> <td>·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td> <td>·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td> </tr> <tr> <td>· 일반인, 독자 외</td> <td>·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td> </tr> </tbody> </table>	기준 1(원고 집필인)	기준 2(원고 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 강사 사례비 지급 기준 A급	·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기준 1(원고 집필인)	기준 2(원고 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 강사 사례비 지급 기준 A급	·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 사업기록비																		
- 사진, 영상기록비 등																		
○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배너, 브로슈어 등																		
※ 기념품, 판촉물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편성 및 집행 불가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해년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방역을 위한 소모품 등																		
※ 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편성 불가																		
○ 회계검증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비</th> <th>수수료(단위: 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3천만원 미만</td> <td>282,000</td> <td>※ 부가가치세 포함</td> </tr> <tr> <td>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td> <td>336,000</td> <td>※ 필수 편성</td> </tr> <tr> <td>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td> <td>365,000</td> <td></td> </tr> <tr> <td>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td> <td>505,000</td> <td></td> </tr> <tr> <td>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td> <td>547,000</td> <td></td> </tr> </tbody> </table>	사업비	수수료(단위: 원)	비고	3천만원 미만	282,000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 필수 편성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사업비	수수료(단위: 원)	비고																
3천만원 미만	282,000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 필수 편성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 단, 사업 참여자(동호회, 주민 등)의 행사 답사, 견학 등을 위한 입장료, 관람료 편성 불가 																															
	임차료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등 ※ 추진주체(단체) 소유의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 																															
여비 (220)	국내 여비 (01)	○ 사업 관련 출장경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역</th> <th>지급방법</th> <th>지급액(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관내</td> <td rowspan="2">일비</td> <td rowspan="2">정액</td> <td>- 4시간 미만 : 10,000원/1일</td> </tr> <tr> <td>- 4시간 이상 : 20,000원/1일</td> </tr> <tr> <td rowspan="4">관외</td> <td rowspan="2">교통비</td> <td rowspan="2">실비</td> <td>-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td> </tr> <tr> <td>-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td> </tr> <tr> <td rowspan="2">숙박비</td> <td rowspan="2">실비 (1박당)</td> <td>-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td> </tr> <tr> <td>-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td> </tr> <tr> <td rowspan="2">식비</td> <td rowspan="2">정액</td> <td>-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td> </tr> <tr> <td>- 광역시 : 60,000원/1박</td> </tr> <tr> <td rowspan="2">일비</td> <td rowspan="2">정액</td> <td>- 그 외 : 50,000원/1박</td> </tr> <tr> <td>- 20,000원/1일</td> </tr> <tr> <td rowspan="2">일비</td> <td rowspan="2">정액</td> <td>- 20,000원/1일</td> </tr> <tr> <td>- 20,000원/1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숙박비	실비 (1박당)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	식비	정액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일비	정액	- 그 외 : 50,000원/1박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 20,000원/1일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숙박비	실비 (1박당)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																														
식비	정액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일비	정액	- 그 외 : 50,000원/1박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 20,000원/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전문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일반수용비에서 편성 및 집행) ※ 관외출장 시 식사를 대접받거나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식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식비 지급 시 그 금액을 제외(1식 6,600원) 																																	
- 관내 기준: 단체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 거리의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여비는 정액 지급하므로, 별도의 주유비 또는 택시비 지급 불가 ※ 관외 또는 관내 출장 시, 일비를 지급하므로 택시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관내여비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기준 5만 원 이내(초과 시 자부담)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다과비 및 간담회비(식대)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 식대 기준단가: 10,000원/1인 1일 기준 ※ 1인 1일 최대 15,000원 																															
민간이 전(320)	민간경 상보조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별 추진 주체 사업비 - 단위사업별, 단체별 지원금 기준 준용(공모안내문 7쪽~9쪽 참조) ※ 이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정산 필수 																															

구분	시도	시군구	센터명	운영방식	개관연도
1	서울 (5)	은평구	은평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2		금천구	가산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17
3		종로구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4		서대문구	독립문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5		광진구	광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6	부산 (18)	사하구	두송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7		부산진구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8		중구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9		동구	범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0		수영구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1		동구	좌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2		서구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3		부산진구	전포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4		서구	동대신3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5		북구	금곡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6		사상구	감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7		영도구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8
18		동구	초량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9		중구	부산 생활문화센터(한성1918)	민간위탁	2018
20		수영구	구락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21		동구	수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22		동구	매축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23		금정구	섯골마실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24	대구 (8)	남구	대덕문화전당 대덕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25		북구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26		달서구	달서 생활문화센터 장기점	민간위탁	2016
27		달서구	달서 생활문화센터 송현점	민간위탁	2016
28		달성군	서재 행복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29		남구	대명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30		서구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31		동구	아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32	인천 (10)	미추홀구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민간위탁	2016
33		중구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민간위탁	2016
34		동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35		부평구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민간위탁	2017
36		중구	개항장 문화마당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37		연수구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38		옹진군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39		옹진군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40		계양구	계양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41		연수구	507 문화병커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42	광주 (8)	서구	동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43		광산구	광산문화원 광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44		서구	광주 서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45		남구	남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46		서구	치평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47		서구	서창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9
48		북구	북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구분	시도	시군구	센터명	운영방식	개관연도
49		동구	전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50	대전 (4)	서구	둔산1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51		서구	대전시립미술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52		중구	한밭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53		동구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54	울산 (3)	울주군	울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55		중구	중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56		북구	울산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57	세종 (2)	분청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58		세종시	부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59	경기 (15)	동두천시	동두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0		고양시	아람마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1		고양시	호수마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2		수원시	수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63		양주시	777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15
64		수원시	지동 창릉마을 창작센터	직영	2015
65		수원시	경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66		용인시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67		화성시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68		성남시	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69		부천시	오정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70		부천시	소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71		평택시	현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72		김포시	월곶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73		군포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74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하다	직영	2020	
75	강원 (13)	화천군	화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76		양구군	동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77		동해시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78		영월군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79		강릉시	임당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80		원주시	원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81		영월군	덕포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82		춘천시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83		평창군	달빛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8
84		철원군	화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85		원주시	판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9
86		양구군	남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87		양구군	방산면 생활문화센터	직영/주민자율	2020
88	충북 (3)	괴산군	괴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89		충주시	충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90		청주시	청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91	충남 (9)	서산시	서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4
92		아산시	온양문화원 온양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93		금산군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94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95		부여군	부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96		아산시	배방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97		태안군	태안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98		당진시	당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99	전북 (14)	전주시	삼천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00		전주시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구분	시도	시군구	센터명	운영방식	개관연도
101		전주시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02		전주시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03		장수군	장수한누리전당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04		전주시	우아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05		완주군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106		김제시	김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6
107		고창군	고창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08		진안군	진안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09		완주군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10		완주군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11		정읍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12		부안군	부안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113	전남 (11)	여수시	여수 예술인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14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15		화순군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6
116		화순군	화순읍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17		보성군	검백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18		해남군	계곡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8
119		장흥군	천관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0		보성군	조성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1		광양시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22		순천시	순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민간위탁	2018
123		해남군	해남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20
124	경북 (8)	성주군	성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125		영덕군	영덕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5
126		상주시	상주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5
127		영덕군	예주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28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7
129		군위군	군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30		영천시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31		경산시	경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132	경남 (11)	거창군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5
133		밀양시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34		밀양시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6
135		남해군	남해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36		산청군	덕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7
137		밀양시	기산리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38		하동군	악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39		창원시	중앙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40		창원시	성호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141		김해시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20
142		김해시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20
143	제주 (6)	제주시	영평하동 알무드내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44		제주시	내도동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45		제주시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17
146		제주시	우도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8
147		제주시	해안동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9
148		제주시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2020